

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안 심사보고

(의안번호 제15호, 2000. 6. 20)

신청사건립위치선정특위
2000. 11. 4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. 6. 20 사천시장 제출
- 나. 의안 회부일자 : 2000. 6. 23 특별위원회 회부
- 다. 특별위원회 구성 : 2000. 7. 11 제1차 회의(위원장 및 간사선임)
- 라. 특별위원회 회의 : 2000. 7. 12 제2차 회의(제안설명 및 토론)
2000. 7. 18 제3차 회의(현지답사 및 토론)
2000. 8. 16 제4차 회의(질의 및 토론)
2000. 8. 24 제5차 회의(현지답사)
2000. 9. 26 제6차 회의(토론)
- 마. 의 결 일 자 : 2000. 11. 3 제7차 회의(토론, 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회계과장 김영고)

가. 제안이유

- 1995년 시군통합 당시 통합청사 건립을 양지역 발전축의 중심지에 건립토록 양지역 주민대표와 약속된 사항임
- 양청사의 구분(이용거리 19km) 사용으로 시민과 공무원이 불편을 겪고 있고, 시민들로부터 수많은 건의 및 독촉여론이 분분하여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를 조속히 선정하여 청사건립을 구체화시키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신청사건립위치선정안 장소
 -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30-1번지 일원의 25,000~30,000평(부곡마을·공동묘지 주변)

○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사천시종합청사 건립공사
- 공사기간 : 2000. . . . ~ 2003. 12월
- 사업위치 :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30-1번지 일원
- 사업비 : 300억원
- 사업량
 - 부 지 매 입 : 25,000평
 - 건 물 층 수 : 지하 1층, 지상 5층
 - 건물연면적 : 5,600평
 - 구 조 : 철골·철근콘크리트조
- 사업비 투자계획

(금액단위 : 억원)

구 분	계	기투자 (99년까지)	2000	2001	2002	2003
계	300	0.2	50 (30)	130	80	39.8
국 비	0	0	0	0	0	0
교부세	20	0	0	20	0	0
도 비	30	0	20	10	0	0
시 비	150	0.2	30 (30)	50	50	19.8
지방채	100	0	0	50	30	20

※ 예산확보액 ()에 기재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1995년 시군통합 당시 통합청사 건립을 양지역 발전축의 중심지에 건립토록 양지역 주민대표와 약속된 사항임.

- 통합청사 위치 선정은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화합을 위한 최우선 과제임.
- 양청사의 구분(이용거리 19km) 사용으로 시민과 공무원이 불편을 겪고 있고, 시민들로부터 수많은 건의 및 독촉 여론이 분분하여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를 조속히 선정하여 청사건립을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사안임.
- 신청사 건립위치는 통합당시 합의문에 명시된 대로 양지역의 지리, 경제, 문화, 교통, 생활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전축의 중심지에 건립토록 되어 있고, 선정된 위치는 양청사의 중심지점임. (9.5km 지점)
- 도시기본계획에는 3개권역으로 나누어 계획되어 있으며, 권역별 세부계획에는 남부관광생활권(구 삼천포 및 도서지역), 동부산업생활권(사천읍 및 주변지역), 서부전원생활권(곤양면 및 주변지역)으로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, 그 중 용현면과 남양동 일대가 개발 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음.
- 용현면 덕곡리 430-1번지(부곡마을·공동묘지 주변) 일원은 발전축의 중심이며, 개발 예정용지이고, 현 양청사 중심지역에 위치할 뿐 아니라 구 국도 3호선과 인접하고 와룡산 줄기가 뒤쪽에 있으며 사천대교가 개통시 서부, 남부, 동부지역의 교통 중심지 역할로 시민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사료됨.

4. 토론요지

-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 추진상황(별첨참고)

5. 심사결과 가결

가. 표결안건 :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안

나. 표결일시 : 2000. 11. 3 11시 56분경

다. 표결방법 : 기립

라. 의결정족수 : 출석위원 13명 중 13명(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일 경우 의결) 출석

마. 표결시 의원수 : 출석위원 13인 중 6인 퇴장(11시54분경)한 후 잔류위원 7인이 표결에 참여하였음.

(퇴장위원 : 이영술, 차병탁, 강석춘, 김현철, 정순갑, 강석순)

바. 표결결과 : 찬성 - 7인, 반대 - 없음, 기권 - 없음

사. 표결선포 :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안 표결결과 7명 위원이 표결에 참여하여 7명 위원이 찬성하였기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음